**※ [주의]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,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# 퇴직연금 환매조건부채권(RP) 핵심(요약)설명서

**[핵심(요약)설명서]**

이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)

**[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]**

| 구분 | 특징 | 수익률형태 |
|---|---|---|
| 퇴직연금 RP |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일정기간 후 일정가격으로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매도하고, 투자자에게 약정된 수익율을 지급하는 상품 | 약정금리형 |
| 발행어음 | 발행어음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1년 이내의 약정된 수익률로 발행한 어음 | 약정금리형 |

**[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]**

**□ 발생 가능한 불이익**

- 본 상품은 한국투자증권과 담보 채권이 모두 지급능력을 상실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.



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만기 이전에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 되오니 가입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3 페이지 중도해지 적용금리 참조)
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금리로 적용됩니다.

**□ 투자위험등급: 6 등급(매우낮은위험)**

| 투자자 성향 | | 공격투자형 | 적극투자형 | | 위험중립형 | 안정추구형 | 안정형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상품 투자위험 등급 | 위험등급 | 1 등급 | 2 등급 | 3 등급 | 4 등급 | 5 등급 | 6 등급 |
| | 위험도 | 매우높은위험 | 높은위험 | 다소높은위험 | 보통위험 | 낮은위험 | 매우낮은위험 |

| 유동성위험 | 중도매도(환매)불가 [ ] | 중도매도(환매)시 비용발생 [ ] | 중도매도(환매)가능 [○] |
|---|---|---|---|

**□ 투자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**

-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 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 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며,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를 통해 투자자에게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임을 고려하여 6 등급(매우낮은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- 이 상품은 투자원금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예금 또는 적금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
- DB 제도: 만기일에 별도 해지 신청이 없을 시 원금에 만기지급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당초 약정 기간과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RP 로 자동 재예치 (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) 됩니다.
- DC.IRP 제도: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한 가입자의 경우 상환 자금은 운용 대기기간 만료 후 사전지정운용방법대로 운용이 개시되며, 대기기간 동안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.

**[민원, 상담 연락처]**

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퇴직연금 고객센터(1588-8844), 인터넷홈페이지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 고객의 소리(이용안내 > 고객센터/FAQ > 고객의 소리)와 본사 민원담당부서(02-3276-4334)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 외부 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# 퇴직연금 환매조건부채권(RP) 상품설명서

## □ 환매조건부채권(RP)이란?

환매조건부 채권매매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일정기간 후 일정가격으로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매도하고, 투자자에게 약정된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.

## □ 주요 내용

1. 가입대상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
2. 상품투자위험등급(투자성향): 6 등급(매우낮은위험)
3. 약정기간: 1~60 개월 중 매월 공시기준에 따른 기간(약정일자)[주1]으로 가입 가능
4. 가입금액: 1 원 이상 원단위
5. 중도해지 및 인출: 만기 전 중도해지 및 인출 가능
6. 만기처리방법:

- DB 제도: 만기일에 별도 해지 신청이 없을 시 원금에 만기지급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당초 약정 기간과 동일한 만기를 가지는 RP 로 자동 재예치 (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) 됩니다.
- DC.IRP 제도: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한 가입자의 경우 상환 자금은 운용 대기기간 만료 후 사전지정운용방법대로 운용이 개시되며, 대기기간 동안은 현금성자산[주2]으로 운용됩니다.

※ **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:** DC.IRP 가입자가 일정기간 만기 자금 등을 운용지시하지 않을 경우,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(사전지정운용방법)으로 자동 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가입자는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가 지난 시점까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, "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2주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"을 통지 받게 됩니다. 통지 후 2주가 지났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설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.

7. 과세: '퇴직연금 RP' 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.
8. 예금자보호:




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9. 매매기준시간: 영업일 08:00~17:00

주 1) '당사 홈페이지>연금>퇴직연금>퇴직연금 알아보기>퇴직연금 사업자공시>원리금보장상품 적용금리'에 공시된 RP 만기
주 2) 현금성자산 '당사 홈페이지>연금>퇴직연금>퇴직연금 알아보기>공지사항'에서 금리 및 편입자산 확인 가능

## □ 적용금리

본 상품은 상품 매수결제일에 '당사 홈페이지 > 연금 > 퇴직연금 > 퇴직연금 알아보기> 퇴직연금 사업자공시> 원리금보장상품 적용금리' 에 공시된 RP 고시금리(약정금리)를 적용합니다. 단, 만기 전 중도해지 및 인출 시에는 아래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일부터 중도해지 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- 일반중도해지: 약정금리에서 1%p 를 차감한 금리 적용
  (약정금리가 1% 이하인 경우 일반중도해지 시 0.01% 적용)

- 특별중도해지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 사유 등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약정금리 적용

[특별중도해지 사유]
① 퇴직[사간전입, 회사의 합병/분할 등으로 인한 퇴직 포함] 등 급여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
③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④ 사용자의 합병/분할/영업양수도 및 제도전환으로 인한 경우
⑤ 퇴직연금 사업자의 합병/분할 등으로 인해 제도를 이전하는 경우
⑥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임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경우
⑦ 연금지급 및 연금지급 신청을 위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
⑧ 만기일이 공휴일(토요일, 일요일 등)이어서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
⑨ 퇴직연금 운용관리,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중도해지 경우
⑩ 사업장의 폐업 및 파산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⑪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

※ 본 상품은 상품 매수결제일에 '당사 홈페이지 > 연금 > 퇴직연금 > 퇴직연금 알아보기> 퇴직연금 사업자공시> 원리금보장상품 적용금리' 에 공시된 RP 고시금리를 적용합니다. 따라서 신규, 추가입금 및 만기 재예치의 경우 금리 변경에 대한 별도 통보 없이 상품 매수결제일에 공시된 RP 고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가 지급 됩니다.

※ 아래 내용은 고객님께서 교부 받으신 설명서에 추가되는 내용이오니 설명을 잘 들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**▣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**

| | |
|---|---|
| **행사요건** |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**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**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|
| **대상 금융상품** |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 |
| **해지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** | 고객님께서 회사의 **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**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 |
| **해지절차** | **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(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)에 대하여 설명**해 드립니다. |

**▣ 자료열람요구권 안내**

| | |
|---|---|
| **행사요건** | 고객은 **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**으로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제 28 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.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|
| **자료열람** |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, 범위,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점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.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 년(일부 자료는 5 년)동안 보관합니다.<br>단,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,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 |

**▣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안내**

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.

| | |
|---|---|
| **대상상품** | 1. 투자성상품: 고난도금융투자상품(단위형), 고난도투자일임계약, 고난도금전신탁계약, 비금전신탁<br>2. 대출성상품: 신용공여(신용거래, 주식담보대출) |
| **청약철회 행사방법** | **[투자성상품]**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(숙려기간 2 일 포함 시 9 일 이내)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고객님께서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계약/청약한 금액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|
| | **[대출성상품]**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청약 철회를 요청한 경우 고객은 대출원금과 이자,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지대(인지세의 50%)등을 반환해야 하며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반대매매 등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<br>청약철회는 내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|

**▣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**

| 민원신청 | ⇨ | 사실조사 | ⇨ | 민원 회신 | ⇨ | 민원인 수용 여부 결정 | ⇨ | 수용 시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*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
*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(민원)이 있는 경우,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| 접수처 | 접수방법 | 비고 |
|---|---|---|
| 전자민원접수 | 홈페이지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 | 고객센터>고객의 소리 |
| 영업점민원창구 | 서면(민원신청서) | - |
| 본사 민원담당부서 | 이메일(minwon@koreainvestment.com), 우편, FAX(02-3276-4332) | 소비자지원부(02-3276-4334) |

**▣ 외부기관(금융감독원 등)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**

| 분쟁조정 신청 | ⇨ | 사실조사 | ⇨ | 조정안 제시 | ⇨ | 양 당사자 수용 여부 결정 | ⇨ | 수용 시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*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
*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

| 접수처 | 연락처 | 바로 가기(인터넷) |
|---|---|---|
| 금융투자협회 | 02-2003-9426 | (http://www.kofia.or.kr/wpge/m_77/sub040102.do) |
| 한국거래소 | 02-1577-2172 | (http://sims.krx.co.kr/p/Drct0201/) |
| 금융감독원 | 1332 | e-금융민원센터 링크(www.fcsc.kr)(PC) |

**▣ 판매직원 확인 사항**

| | |
|---|---|
| **판매직원 확인사항** |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<br>한국투자증권_____지점 (☎ _____) 직위: _____ 직원명 : _____ (서명) |